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 內 事 件

實用新案登錄無效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1. 7. 7.)

裁 判 長 : 大法院判事 정 대 군

關 與 法 官 : // 김 중 서 · 윤 일 영 · 김 덕 주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배 효 석 (경남 함안군 대신면 구해리 235-10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 : 김 일 술 (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830)
3. 原 審 決 : 特許廳 1980. 6. 20字, 1978年 抗告審判 (당) 第122號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5. 理 由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本件 實用新案登錄 第8846號의 考案構成은 그 出願前에 公開된 實用新案登錄 第4986號의 考案構成과 極히 類似하며 단순한 設計變更에 不過하고 作用效果도 同一한 것임을 確定하고 本件 實用新案登錄은 新規性이 없는 것으로서 舊實用新案法 第5條 第2項에 違背되어 登錄된 것이므로 그 登錄은 無效라고 判斷하고 있는 바 이를 記錄에 의하여 살펴보면 原審의 위 事實認定과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探證法則違背,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다. 論旨는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위 當事者間의 1977年 審判 第196號(登錄實用新案 第8846號 無效審判) 審決不服·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 : 原審決을 破毀한다.

登錄實用新案 第8846號의 登錄은 이를 無效로 한다.

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審 決

1977年 審判 第196號

審判請求人 : 배 효 석

被審判請求人 : 김 일 술

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8846號 實用新案의 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 : 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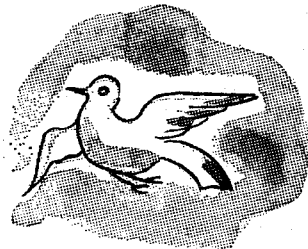
— 參 考 —

抗告審

1978年 抗告審判 (당) 第122號

抗告審判請求人 : 배 효 석

被抗告審判請求人 : 김 일 술



사라지는 請託風潮 明朗社會 이룩한다!